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85
----------	------

발의연월일 : 2017. 5. 23.

발의자 : 이상돈 · 주승용 · 김삼화

이찬열 · 한정애 · 송기석

천정배 · 김관영 · 신창현

강병원 · 윤영일 · 황주홍

정인화 · 김동철 · 이정미

송옥주 · 김광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금속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어패류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인체에까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음.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의 경우 제련소의 영향으로 해당 수역의 어패류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 영향권에 대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지만, 해당 하천의 관리청인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다는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관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수영 등 물놀이나”를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로, “관할구역의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을 “해당”으로, “자제하도록”을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정기준과”를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